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손실보상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요건이 명백한 경미사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액사건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며, 해산시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
- 나.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은 소방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소방청장 등(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 다.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요건이 명백한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액사건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소액사건 보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각”을 “필요한 경우 각각”으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 중 3명(위원중 포함)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3명으로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소액사건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그 직위로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의 과반수는”을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보상위원회의”를 “보상위원회(소액사건 보상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지명한다”를 “지명(그 직위에 지명 가능)한다”로 하고, 같

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⑦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당연직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그 직위에 지명 가능)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위원장”을 “보상위원장(소액사건 보상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액사건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u>각각</u>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 ----- <u>필요한 경우 각각</u> ----- -----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② ----- ----- ----- <u>구성하되, 위원 중 3명 (위원중 포함)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 .
<u><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3명으로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소액사건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u>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u>	④ ----- ----- ----- ----- <u>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소속 소</u>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 5. (생략)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신설>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방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
-----.

1. --- 소방공무원(그 직위로 임명)

2. ~ 5.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삭제>

⑥ 보상위원회(소액사건 보상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
----- 지명
(그 직위에 지명 가능)한다.

⑦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① -----
----- 당연직

에서 호선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생략)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
(그 직위에 지명 가능) 한다.

② 보상위원장(소액사건 보상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상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소액사건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412